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79

발의연월일: 2025. 3. 31.

발 의 자: 백혜련 • 이병진 • 이기헌

허 영・남인순・진선미

이수진 · 김준혁 · 전진숙

이재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민법」 제837조(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,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재산명시·재산조회제도,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수 있음.

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 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 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

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,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항제 2호나목7)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민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 안번호 제947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나목7) 중 "제924조의2"를 "제924조의2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목에 7)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)의2 「민법」 제924조의2제2항 및 3항에 따른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변경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가정법원의 관장 사항) ①	제2조(가정법원의 관장 사항) ①		
다음 각 호의 사항(이하 "가사			
사건"이라 한다)에 대한 심리			
(審理)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			
속관할(專屬管轄)로 한다.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
2. 가사비송사건	2	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
나. 마류(類) 사건	나		
1) ~ 6) (생 략)	1) ~ 6) (현행과 같음)		
7) 「민법」 제924조, <u>제92</u>	7) <u>제</u> 9		
<u>4조의2</u> , 제925조 및 제926	<u>24조의2제1항</u>		
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,			
일시 정지, 일부 제한 및			
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			
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			
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			
회복의 선고			
<u> <신 설></u>	<u>7</u>)의2 「민법」 제924조의2		
	제2항 및 제3항에 따른		
	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		
	처분 또는 변경		
8) ~ 10) (생 략)	8) ~ 10) (현행과 같음)	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	